

[사 건 명] 행심 2016-37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1. 2016. 4.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 5명이 같은 반 피해자 ○○○ 학생을 괴롭혔는데, 청구인 등 가해학생들은 ○○○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의 물통에 소변을 보거나 샴프심·연필 등을 ○○○의 물통에 담그거나, 이물질이 담긴 분무기를 피해학생의 신체와 소지품에 수차례 뿌렸으며, 피해학생을 못 움직이게 하고 성기를 만졌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9일 등 처분을 받고,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일부인용결정을 하여 통보하였으며,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그 결정이 추인되었다.

II.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1. 청구인과 ○○○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친한 친구가 되었고, 올해 여름방학에는 ○○○ 보호자의 제의로 일주일간 170km를 걷는 종주대회에 함께 참석하고, 영화도 보는 등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
2. 청구인의 행동은 다른 친구들 간에도 자주 하는 장난이며 ○○○가 불쾌해 하면 바로 사과했고, ○○○도 청구인에게 게임캐릭터를 키우라고 하고 신발주머니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장난으로 여겼다.
3. 청구인은 ○○○의 머리카락 몇 가닥 끝을 잡고 1cm 가량 자른 장난을 했을 뿐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4. 화장실에서 □□□이 청구인에게 ○○○의 물통에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물통을 잡아주다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놓고 나왔고, 이후 쓰레기통에서 물통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5. 2016. 9. 1. 이후 학폭위 처분은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없다.
6. 처분결과통지서 등기를 9. 26.에 받았는데 출석정지기간이 9. 26.~9. 30.이어서 청구인의 모가 피청구인에게 이미 등교시켰다고 항의하니 “오늘 어쩔 수 없으니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마라.” 라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런 무리한 집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7. 청구인과 모는 ○○○와 그 부모에게 계속 사과하였고,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폭위 후 ○○○는 청구인에게 협박의 말을 해 청구인은 불안감 속에 위축되어 생활하며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8. 그리고 청구인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은 장난친 것을 기술했던 것일 뿐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내용이 아니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측의 민원에도 피청구인은 학습권보장이나 청구인을 선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 본인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16. 5.부터 2학기에 이르기까지 ○○○에게 피해를 주었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2. ○○○는 ‘절친한 사이’를 감안하여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대신 심한 장난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국토대장정에 함께 참가하는 노력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괴롭히자 정식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3. 영화를 보러가기로 주고받은 문자는 2016. 8. 8.이고 학폭신고는 2016. 8. 25.이므로 신고 직전까지도 관계가 원만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청구인은 본인의 행위가 심했다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가장하여 수차례 학교폭력행위를 했다.
5. 청구인은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구실을 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6. 피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을 준수하여 심의했으며,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점수(14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출석정지로 감경하여 조치했다.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조치를 집행하라고 되어 있을 뿐, 가해학생의 이의제기를 고려하여 조치의 집행을 늦추거나 정지하라는 내용은 없다.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집행을 하였다.
8.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사과는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일뿐이며, 피해학생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9. 피청구인의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혹하거나 과장되었다면 다른 가해학생 역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지만,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처분을 받은 다른 학생은 현재 이의제기 없이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조치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다는 반증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 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18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 제출한 증거, 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지간이고,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운동을 같이하거나 각자의 집을 왕래하는 등 친구로 지내온 것은 사실이다.

2) 청구인등 ◇◇중학교 같은 반 학생 5명은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에 대해 머리 자르기 등 모욕적 행위, 때리기 등 폭행, 성희롱, 성기잡아 당기기 등 성폭력, 신발끈 묶기, 물건 투척 등 학교폭력을 행하여 ○○○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있다.

3) 위 학교폭력 중 청구인이 ○○○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른 사실, ○○○의 신발 끈을 몰래 묶어 놓은 사실, 지속적으로 ○○○의 물건(필통, 필통 속 학용품, 신발주머니 등)을 교실 창문 밖으로 수회 버려 ○○○가 주워오도록 만든 사실, 위 □□□이 ○○○의 성기를

잡아당길 때 청구인과 △△△이 ○○○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실, ○○○의 허락 없이 수차례 ○○○의 물을 몰래 마시고, 청구인의 제안으로 위 □□□이 ○○○의 물통에 오줌을 싸서 물통을 버린 사실, ○○○의 물통에 샤프심, 연필심 등을 수차례 넣고, 수업시간에 ○○○에게 물총을 쏘고, 머리와 등에 분무기 물을 부은 사실, 초콜릿을 넣은 분무기 물을 ○○○에게 쏘고, ○○○의 가방 곁에다 분무기로 초콜릿 물을 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는 청구인등 5명의 학생들로부터 2016. 4.경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왔지만 친구지간이라 바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청구인 등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계속 하였다.

5) ○○○는 결국 참다 못해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12.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결정을 하고, 2016. 9.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후 2016.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9일과 같은 법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이수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2016. 9. 26.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청구인의 ○○○에 대한 이 사건 학교폭력의 사실 관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중 위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지내왔고, ○○○도 청구인을 때리는 등 청구인의 행동은 다른 친구들 간에도 자주 하는 장난이며, ○○○가 불쾌해 하면 바로 사과했으며, 이 사건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폭력은 장기간(2016. 4.경-2016. 8.경)에 걸쳐 수차례 행해졌고, 이 사건 학교폭력 중에는 폭력, 모욕적 행위, 성폭력 등도 있어 그 내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혼자서 행한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 청구인을 포함해 다수가 공동으로 학교폭력을 행하였고, 무엇보다 ○○○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장난으로 행해졌고, ○○○가 불쾌해 하면 바로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설령 사과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학교폭력이 반복된 것을 볼 때 진정한 사과라 보기 힘들며, 이 사건 학교폭력을 단순히 ‘장난’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과 그 부모는 이 사건 학교폭력 신고 이후 ○○○와 그 부모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 측에서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자간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따른 점수로 판단한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9. 12.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매우 높고, 고의성이 높으며 화해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 고시안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면 심각성 4점, 지속성 4점, 고의성 3점, 화해정도 1점으로 합계 12점이라 출석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회의록에 환산 점수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반성정도에 대한 점수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고시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처분결과통지서 등기를 9. 26.에 받았는데 출석정지기간이 9. 26.~9. 30.이라 무리한 집행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집행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 2 규정의 취지 및 해석상 가해학생의 이의제기를 위한 기간 등의 고려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신속한 집행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할 것이므로, 출석정지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학교폭력을 인정한 내용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며, 피청구인이 오인된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취신할 수 없는 이의 주장을 우선시하였다거나 위원이 아닌 자가 조치에 관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과장된 해석을 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훼손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바.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오로지 청구인에 대한 징계목적만 있을 뿐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9일 외에도 같은 법 제17조 제3항과 제9항의 특별교육이수처분이 병과되어 ‘부자일체감동캠프 5시간’을 이행하라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청구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문답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선도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사.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의결과정 및 전체적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자치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과 제9항의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면서 ‘부자일체감동캠프 5시간’을 병과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위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적시하면서 제17조 제3항과 제9항의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만 명시하고, 같은 조 제9항은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V. 결어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